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1997-11-01
MSDS - 3050157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1 / 5		개정 횟수	2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제 품 명	수성바인다 200	색상	
일반적인특성	건축용/콘크리트용/처리제/전처리제/수성바인다 200		
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용도: 각종 시멘트기재 신축물의 풍화 초킹방지용 전처리도료 사용상의 제한: 해당없음		
공급자/유통자정보	삼화페인트공업(주) 및 대리점		
제조사 정보	삼화페인트공업(주)	전화번호	(031) 499 - 0394
주 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(성곡동)	작성부서	건축도료파트 / 박정영

2. 유해.위험성

가. 유해.위험성 분류

① 분류되지 않음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요소

① 그림문자 : 해당없음

② 신호어 : 없음

③ 유해, 위험문구 : 해당없음

④ 예방조치문구 : 해당없음.

다. 유해성.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. 위험성

◎ NFPA 등급 (0~4 단계)
-보건:0, 화재:0, 반응성: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NO	함유량(%)	비고
Water	물	7732-18-5	81 ~ 90%	
2-Methyl-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ethylhexyl 2-propenoate		26655-10-7	1 ~ 10%	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① 화학물질이 잔류하지 않을때 까지 충분히 씻을 것.

②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한 15분이상 씻은후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①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기며 연성세제 또는 다량의 물로 씻을 것.

② 용제나 신나를 사용하지 말 것.

다. 흡입 했을 때 :

①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한다.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1997-11-01
MSDS - 3050157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2 / 5		개정 횟수	2

4. 응급조치 요령

- ② 호흡이 멎었거나 불규칙하면 인공호흡을 시킨다.
 - ③ 구토물을 삼키지 않도록 한다.
- 라. 먹었을 때:
- ①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할 것.
 - ②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
 - ③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
- 마. 의사의 주의사항 :
- ①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고 필요시 위세척을 고려할 것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 방법

- 가. 적절한 소화제: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, 일반적인 포말
 - 나.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: 해당없음
 - 다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(예,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): 연소 및 가열시 탄소산화물 발생
- 라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- ① 호흡기보호 : 유기용제 정화통을 장착한 화학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
 - ② 눈보호 : 보호용 안경을 착용할 것
 - ③ 손보호 : 보호장갑 또는 PVC장갑을 착용할 것
 - ④ 신체보호 : 불침투성 보호의와 작업화, 장갑등의 장비를 착용할 것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: 호흡기구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,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 금지할 것,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물질이 타 지역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을 것. 토양 또는 수중 유출을 막을 것
-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: 모래, 보루, 기름처리제 등의 흡수제로 닦아내고 관련법규에 의거한 폐기용 용기에 담아 폐기할 것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: 보호장비착용 화원, 열 발생 및 스파크 주의. 큰 충격과 압력주의.
- 나. 안전한 저장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: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
피해야 할 조건 : 혼합금지 물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노출기준

구성성분	CAS NO	국내노출기준	ACGIH 노출기준
Water	7732-18-5	자료없음	자료없음
2-Methyl-2-propenoic acide butyl ester p 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ethylhe xyl 2-propenoate	26655-10-7	자료없음	자료없음

-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화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MSDS - 3050157 Page 3 / 5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1997-11-01
		개정 일자	2016-10-01
		개정 횟수	2

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
다. 개인보호구

- ① 호흡기 보호: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분진마스크(방진마스크) 또는 유기용제용 호흡기 보호구(방독마스크)를 착용할 것.
- ② 눈보호: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.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할 것.
- ③ 손보호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적합한 화학물질용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.
- ④ 신체보호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적합한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할 것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 : 유색 불투명 액체	카. 인화성(고체,가스) : 자료없음
나. 증기압 : 자료없음	타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다. 냄새 : 약한 모노머 냄새	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라. 용해도 : 수용성	하. 비중 : 1.01
마. 냄새역치 : 자료없음	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 : 자료없음
바. pH : 자료없음	너. 자연발화온도 : 자료없음
사. 녹는점/어는점 : 자료없음	더. 분해온도 : 자료없음
아. 끓는점/끓는점 범위 : 자료없음	러. 점도 : 48KU
자. 인화점 : 해당없음	머. 분자량 : 자료없음
차. 증발속도 : 자료없음	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: 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.
- 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: 중합되지 않음.
- 다. 피해야 할 조건 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: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할 것,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.
- 라. 피해야 할 물질: 자료없음
- 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: 탄소화물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자료없음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급성 독성:

화학물질명	LD50. 경구	LD50. 경피	LD50. 흡입(가스)	LD50. 흡입(증기)	LD50. 흡입(분진)
Water	LD50 90000 mg/kg Rat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
2-Methyl-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ethylhe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1997-11-01
MSDS - 3050157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4 / 5		개정 횟수	2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, 육생, 생태 독성

화학물질명	어류	어패류	조류
Water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
2-Methyl-2-propenoic acid but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-ethylhexyl 2-propenoate	자료없음	자료없음	자료없음

- 나. 토양 이동성: 자료없음
- 다. 잔류성 및 분해성: 자료없음
- 라.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: 자료없음
- 마. 기타 유해영향: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

환경에 유입되지 않게 하며,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
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할
유기용제 등 활용 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.
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:

- ① 유엔번호 : 해당안됨
- ② 품 명 : 수성바인더 200
- ③ 정 표 찰 : 해당안됨
- ④ 용기등급 : 해당안됨

나. 운송시 주의사항 : 충격에 주의하고 상온에서 운송할 것

다.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

- ① 유엔번호 : 해당안됨
- ② 유엔적정 선정명 : 해당안됨
-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안됨
- ④ 용기등급 : 해당안됨

라. 해양오염물질: 비대상

마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안전대책

- 화재시비상조치: F-E
- 유출시시상조치: S-E

15. 법적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제41조 및 동법시행령

*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Ammonium hydroxide : 유독물, 배출량조사대상물질

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	MATERIAL SAFETY DATA SHEET	제정 일자	1997-11-01
MSDS - 3050157		개정 일자	2016-10-01
Page 5 / 5		개정 횟수	2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비위험물 비위험물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페페인트와 페래커)에 해당됨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 화학물질의 분류,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

본 MSDS는 KOSHA, IUCLID, ESIS, CEFIC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 : 제정일자 참고

다.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: 2 회 2016/10/01

라. 기타